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서비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과 지방보훈청 등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13”을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10”을 “30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0”을 “2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01”을 각각 “1,10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83”을 “1,075”로 하며, 전문경력관 “6”을 “1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과 지방보훈청 등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정원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13</u>		<u>311</u>	-2	
	.		.		.		
	.		.		.		
일반직 계			<u>310</u>		<u>30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0</u>		<u>298</u>	-2	
	.		.		.		

[별표 3]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101</u>	• <u>1,103</u>	+2
일반직 계	<u>1,101</u>	<u>1,103</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83</u>	<u>1,075</u>	-8
전문경력관	<u>6</u>	<u>16</u>	+1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6